

통 일 의 길



국 토 통 일 원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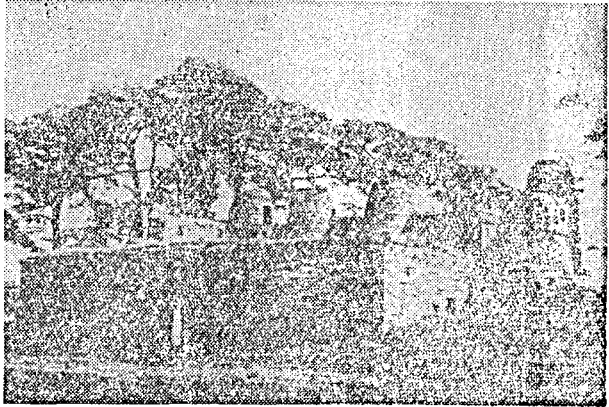
목 차

1. (전통문화)
 국난을 이겨낸 겨레의 슬기..... 5
2. (민주주의 해설)
 민주적 정치제도와 생활 양식.....18
3. (공산주의 비판)
 공산주의 정치 이론과 실제.....30
4. (통일을 위한 사명)
 주변 정세와 우리의 안보.....41
5. (정부시책 소개)
 통일로 가는 평화 외교.....55
6. (북한실정)
 북한의 농촌.....74

국난(國難)을 이겨낸 겨레의 슬기

—역대 대외항쟁 사실과 시련극복(試鍊克服)의 전통—

6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은 자의(自意) 혹은 타의(他意)에 의해 많은 수난(受難)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따라서 본장



(本章)에서는 삼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어 나라의 급보를 전하던 곳이다. (수원성, 흥화대)

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국난을 맞이했던 우리 민족이 어떠한 방법으로 적에 대항하고, 또 이를 극복해 나갔던가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鼎立)하여 치열한 항쟁을 전개하던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중국에서는 남북조(南北朝)의 분열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삼국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항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세기 말경 대륙내부의 혼란을 수습한 수(隋)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589년) 강력한 전제왕권(專制王權)으로 등장하여 동방진출을 기도하게 되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로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우려했던대로 영양왕(嬰陽

王) 9년(598年)에 수문제(隋文帝)는 바다와 육지로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홍수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되돌아갔다. 그 후 양제(煬帝)에 이르러서 30만대군으로서 또 다시 침입을 감행해오니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은 이들을 유인하여 살수(隆水: 지금의 청천강)에서 대패시켰던 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상 길이 빛날 살수대첩(隆水大捷)인 것이다. 여러 차례의 침공(侵攻)을 실패로 끝낸 수(隋)는 결국 수차에 걸친 무리한 고구려 원정(遠征)이 원인이 되어 패망하게 되고 중국 대륙에는 수(隋)에 대신하여 당(唐)이 세력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다.

당(唐)역시 수(隋)와 마찬가지로 동방진출(東方進出)을 꾀하였으니 한반도에서의 고구려와는 필연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보장왕(寶藏王) 4년(654년) 당태종(唐太宗)은 친히 수륙대군(水陸大軍)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 왔으나 안시성(安市城)의 성주(城主)인 양만춘(梁萬春)과 연개소문(淵蓋蘇文)의 탁월한 지략(智略)에 휘말려서 패하여 돌아갔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고구려 원정을 감행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니 수(隋)와 당(唐)에 대한 항쟁에서의 고구려의 승리가 지니는 민족사적 의의는 자못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수(隋)와 당(唐)의 대군(大軍)이 전쟁에 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끈 고구려 국민의 투지(鬪志)는 저절로 돌아나 호전적인 기질을 여지없이 발휘하였으나 그들과의 여러차례에 걸친 거국적인 대전이 고구려가 패망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라에 의한 반도통일의 한 전위적(前衛的)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7세기 중엽 팽팽하게 맞서 있던 삼국 중에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여 버리고 반도(半島)에는 신라와 당이 야심을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차지했던 영토에 새로이 설치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및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가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반도의 통일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唐)과의 외교를 취해왔던 신라는 뜻하지 않은 당나라 군사의 주둔에 당황하게 되었고, 이어서 당(唐)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반도전체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임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를 두고 문무왕(文武王)을 계림주대도독(鷄林州大都督)이 임명하는 등 신라를 당(唐)의 통치하에 두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신라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신라와 당(唐)은 고구려와 백제의 구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자연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니 그 동맹 또한 결렬 상태에 빠지게 됨은 당연한 결과였다. 당(唐)의 속셈이 드러나게 됨에 이르러 신라에서는 한반도 내의 당(唐)의 세력을 몰아내고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통일대업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결의와 욕망이 날로 굳어갔다. 그리하여 전 국민의 결속(結束)과 단결(團結)로서 당(唐)에 대항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적 자각과 열의가 고조(高潮)되어 가니 신라와 당(唐)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당(唐)과 대항하며 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고구려의 유민(遺民)을 우대하고 선동하여 잃었던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는 한편 백제의 옛 영토도 점차 회복하여 갔다. 그리하여 백제 멸망후 16년을 통하여 크고 작은 50여회의 전투를 감행한 끝에 676년(문무왕 16년)경 결국 실력으로서 당(唐)의 세력을 몰아내어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통일된 단일민

족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된 지역이 대동강(大同江)과 원산(元山) 이남이라는 협소한 지역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신라의 통일이 갖는 민족사적 의의는 중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라에 의한 민족결정(民族決定)이 없었던들 반도의 유민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만주(滿州)나 몽고(蒙古) 혹은 한족(漢族)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본래의 민족성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민족으로 되고 말았을 것이다. 즉, 오랜 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하면 지리적, 혈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되고 나아가 언어와 문화 및 역사까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종족(種族)이라는 의식(意識)과 감정(感情)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要素)가 상실되어 본래는 동일한 혈족(血族) 또는 종족(種族)에 속하였더라도 감정과 의식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조선민족의 모체(母體)는 신라의 반도통일로 부터 유래하게 되며 비록 지역적으로 완전한 의미의 삼국통일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도의 민중이 비로소 한 민족, 한 정부, 동일한 법과 풍속, 동일한 지역 안에서 뭉치어 단일 민족으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오늘에 이른 통일을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반도통일이 지니는 민족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역대(歷代)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세에 의해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예가 여러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적 자부심(自負心)과 슬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내고 지탱해 왔는지 거란(契丹)과 몽고(蒙古)의 침입을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고려는 918년 태조왕건(太祖王建)에 의해 건국되었음은 이미

잘 아는 바이다. 고려 초기는 신라말경 부터 각지에 발호하던 호족(豪族)들의 세력이 강대하여서 통일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지 못하다가 6대 성종(成宗)때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외적인 관계를 보면, 북으로는 만주와 중국대륙,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관계가 생긴 것은 북으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거란(契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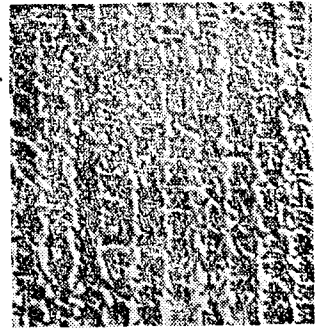
거란(契丹)은 고려 건국초부터 압록강(鴨綠江) 유역의 여진(女眞) 땅을 넘어와 고려와 서로 사신(使臣)을 보내며 국교(國交)를 맺었는데, 거란(契丹) 태종(太宗)에 이르러서 국호(國號)를 대요(大遼)라 바꾸고 여진(女眞)을 정복한 뒤 주위의 여러 적은 나라들을 경영하고 다스리더니 성종(成宗) 12년(993년) 10월 돌연 제 1차 고려침입을 감행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서희(徐熙)를 보내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케 하는 한편 거란(契丹)의 장수(將帥)와 담판케 하였던 바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므로 역사적인 이유대로라면 현재의 요(遼)의 영토가 도리어 고려의 영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려와 요(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동쪽의 여진(女眞)의 옛땅을 회복해야만 가능하고 하여 도리어 강동(江東) 6주(州)를 얻어 영토를 확장하고 강화(講和)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얼마 동안은 표면상으로는 두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듯 하였으나 현종(顯宗) 원년(1010년) 2차 침입을 감행하고 현종(顯宗) 9년(1018년) 다시 제 3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수차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끝까지 지켜 거란(契丹)을 격퇴시켰는데, 특히 강감찬(姜邯贊)장군의 귀주대첩(龜州大捷)은 우리 민족의 역대전쟁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고 있는 커다란 승리였다. 이와 같이 전장터에서는 서희

(徐熙)의 탁월한 웅변술과 지략 및 강감찬(姜邯贊)의 용맹이 국토 보존을 위해 불을 뽐고 있을 즈음 문종(文宗) 때에는 불교의 힘에 의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대장경판(大藏經板)의 주조사업(鑄造事業)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불행하게도 당시 주조된 구판(舊板)이라고 불리우는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은 몽고의 침공으로 소실되어 그 잔편(殘片)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지만 당시의 인쇄본이 다소 남아있어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해인사 대장경판(海印寺 大藏經板)을 또 다시 주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구판(舊板) 대장경판(大藏經板)의 주조가 갖는 문화사적 및 민족정신 함양의 의미에서의 그 의의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란(契丹)의 수차에 걸친 침입에 의한 전화(戰禍)가 지나고 200여년이 지난 뒤 고려는 새로운 외세에 의해 또 한번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그것은 중국대륙에 새로이 일어난 몽고(蒙古)의 침입이었다.

몽고(蒙古)의 최초 침입은 고종(高宗) 18년(1231년)이었는데 당시 최씨(崔氏)의 무인정권(武人政權)은 일대 항쟁을 결의하고 물길에 약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화(江華)로 도읍(都邑)을 옮겼다. 강화로 도읍을 옮긴 후 귀족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은 여전히 전하였으나 전국 각지는 몽고군의 발길 아래 유린되지 않은 곳이 별로 없었으며 백성의 생활도 또한 말이 아닌데다가 귀중한 문화재가 대부분 소실되는 등 전란의 참화는 너무 짙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수차에 걸친 몽고의 위협 끝에 원종(元宗) 11년 개성(開城)으로 환도(還都)하였다. 최씨 일문의 독재정치와 횡포는 매우 컸지만 국민 각자로 하여금 몽고에 대항하는 정신을 고취케 하고 총력을 기울여 장기전(長期戰)을 전개한 것은 문신(文臣)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볼 수 없는 민족정신의 굳건한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씨의 무인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한 고려의 항몽정책(抗蒙政策)은 변할 수 없었지만, 최씨의 무인정권(武人政權)이 무너지고 난 후로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던 항몽(抗蒙)은 원종(元宗) 11년 몽고와 강화를 맺은 후 완전히 결렬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민족문화와 전통을 고수해야만 한다는 일념에서 몽고군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 삼별초(三別抄)의 난(亂)을 하나의 단순한 반란으로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라 여겨지며, 이들의 항거를 통해 고려 무인(武人)의 항몽정신(抗蒙精神) 및 의세에 대한 국가보존의 자세가 얼마나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었던가를 알 수 있겠다. 한편 몽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버린 문화재의 복구를 위해 두번째의 대장경판 간행사업이 초기 대장경판의 인쇄본을 표본으로 하여 대장경판이 소실된 수년 후인 고종(高宗) 23년(1236년)에 강화도에서 행하여졌는 바 전후 16년이란 긴 세월을 소비하면서 국가적인 대사업으로 단행하느라 마칠내 고종 38년에 이르러서 총 8만1천1백27매에 달하는 이른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또 다시 만들었던 것이다. 이 팔만대장경을 또 다시 만들게 된 동기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처의 힘을 빌어 적병을 퇴치하겠다는 신앙적 또는 애국적 정열에 기인하였을



팔만대장경판(상)과 그 인본(하)

것이며, 이것은 또한 대장경의 조판(造板)으로 부처의 자비를 빌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우리 민족의 슬기를 엿보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상의 노력은 굳은 단결과 국가보존의 열망이었음을 우리는 보아 왔다. 어느 국가의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소위 국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각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민족의 가슴 깊숙히 자리잡고 있던 어떤 절박감에 의해 나타나는 민족관념(民族觀念) 내지는 단체의식(團體意識) 같은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관념 내지 단체의식을 갖는 민족에게 역사적인 한 인물이 구심점이 되어 집결되었을 때 민족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는 역사적인 한 인물과 민중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인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중을 이끄는 인물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민족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은 많은 말을 요하지 않는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서희(徐熙)가, 강감찬(姜邯贊)이, 윤관이 그리고 삼별초의 집단이 외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도 모두 온 민족의 정신적 단결에서 이루어진 슬기의 결정체(結晶體)이었다. 이러한 민족의 슬기는 이씨조선에 넘어와서도 면면히 민족의 생활속에 흐르고 있음을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활약이나 의병(義兵)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잘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선조(宣祖) 25년(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상세한 기록이 뒷받침하는 가장 큰 국난이었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적으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종말을 가져와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섬나라 일본은 팽창된 인적자원의 분산을 위해 명(明)나라를 공격한다는 구실하에 조선을 침범해 왔다. 당시 국내에서는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으로 인하여 민심은 이탈되어 있었고 관료는 부패하여 국제정세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을 만큼 부패한 사회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패한 사회상과 무방비한 상황하에서도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를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이가 성웅 이순신 장군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익(李鎰)과 신립(申瑬) 등의 장수가 육전(陸戰)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선조대왕(宣祖大王) 일행의 평양으로의 피난이 결정되는 위급한 사태가 왜적이 침입한 10여일 만에 벌어졌다. 당시의 구차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구태여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육지에서의 패전을 해상에서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있던 이순신 장군은 신묘한 전략과 거북선의 제조 등 새로운 무기를 발명하여 전쟁에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왜적을 분쇄하고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여 전세를 우리 편에 유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가 해군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스스로 함선을 건조하여 국난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의 뛰어난 애국심과 애족하는 마음에 기인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극도로 불리해 있던 전황속에서 충분하지 못한 무기와 전함 몇척을 가지고 옥포(玉浦) 해전의 첫 승리를 기점으로 하여 당포(唐浦), 당항포(唐項浦) 및 한산도(閑山島)에서 각기



이순신 장군의 초상

큰 승리를 거두어 갔다. 특히 한산도 앞바다에서의 해전은 권율(權律) 장군의 행주대첩(幸州大捷) 및 김시민(金時敏)의 진주성 혈전(晉州城血戰)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손 꼽히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이와 같은 눈부신 활약은 해상권(海上權)을 완전히 조선군의 손아귀에 있게 하였고 그 결과 해상으로 북진하여 육군과 합세하려던 왜군의 작전은 완전히 결렬되고 분쇄되어 버렸던 것이다.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이 피해를 입지 않으므로써 전란 중에서도 국가가 재정상의 궁핍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슬기에 기인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적의 보급로를 완전히 위협하여 육군의 작전을 곤란하게 하는 등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은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어 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토대로 하여 한편 육지에서는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은 대개 승려 또는 유학자(儒學者)들로서 그들이 일반 민중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 향토의 방위에 전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국난을 당하여 각처에서 쫓겨하는 의군(義軍)에 투신하는 인민은 날로 늘어나 단시일 내에 상당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들은 혹은 단독으로 혹은 각처에서 재편성되는 관군과의 협동으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비록 이 의병이 국토수복에 큰 전과는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의 운명을 지키려는 민중의 저항운동은 실로 열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의령(宜寧)의 광재우(郭再祐), 옥천(沃川)의 조헌(趙憲), 전라도 장흥(長興)에서의 고경명(高敬命) 부자(父子), 광주(光州)의 김천익(金千鎰), 김덕령(金德齡) 등이 이끈 의병과 서산대사(西山大師), 사명당(四溟堂) 등이 이끈 승병(僧兵)은 그 대표

적인 예라 하겠다. 이들 외에도 크고 작은 허다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같은 의병의 유격활동이 왜군에게 주는 타격은 실로 막대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에서 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은 바 되어 국난의 위기는 평정되었으니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고 끈덕진 것이었나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폐쇄정책을 고집하던 조선은 거의 이를 외면한 채 19세기 후반을 맞이하였고 이어서 노도처럼 밀려오는 열강의 세력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의 세계로 휘몰고 들어 갔다. 갑오경장(甲午更張),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그리고는 치욕적인 한일합방(韓日合邦)…….

1919년(광무 9년)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은 실제적으로 조선의 재반 내정(內政)을 관장하는 것이었으므로 온 국민은 맹렬한 분노속에서 이를 반대하였다. 보도(報導)와 주장(主張)이 통제되어 있던 언론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성신문(皇城新聞)등은 조약



민 영 환

의 전말과 함께 비분강개한 논설을 게재하여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켰으니 국민은 모두 이에 자극되어 분격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등 분노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애국지사가 속출하는 한편 무력으로 반항을 피하는 의병이 각처에서 봉기하였다. 최익현(崔益鉉), 신돌석(申堧石)등의 조직적인 의병활동과 국민 각자의 열화같은 반대에도 아랑

곳 없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멸망시킬 좋은 기회만을 노

리고 있었던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이 고종(高宗)의 뜻이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때마침 「헤이그」(海牙)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대표를 참석시켜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을 역설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악랄한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일본은 이를 기회로 고종(高宗)을 퇴위(退位)시키고 통감(經監)을 설치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다가 마침내 1910년 극도의 무력 억압통치가 이루어지는 합방(合邦)이 선포되었다. 온 국민이 피로써 항쟁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유형 혹은 무형으로 계속되었으니 침략에 대한 항거는 침략의 원흉 및 민족의 반역자들에 대한 암살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그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여러 형태의 침략에 대하여 가장 거대한 반항운동의 하나는 1919년의 3.1독립운동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것이다.

3.1독립운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윌슨」(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에 영향을 받은 국내외의 독립투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3.1운동에 있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한국이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어느 민족이나 스스로 생존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3.1운동당시 서울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선포 하였으니 이것은 결코 일본의 간악한 식민지 정치에 대한 보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족의 의사를 쾌히 발표하여 평화적으로 독립을 되찾자는 민족의 피맺힌 절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무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3.1운동은 끝내 실패하였지만 3.1운동을 통해 나타난 민족의 단결력과 독립에 대한 갈망이 그 이후 수차례 걸쳐 일어난 항일운동을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썩든 삼국시대 이후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힘을 길렀고 외세에 대하여서는 하나로 뭉쳐 항거할 수 있는 단결력을 배웠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재치와 슬기로써 이를 극복하였고 분단된 조국이나마 영광된 조국을 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물려줌으로서 5천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국가를 향유(享有)할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민주적 정치제도와 생활양식

1. 민주적 정치제도



지난 호에서는 민주주의의 뜻,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기회균등, 진리의 상대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이러한 제도하에서 생활하는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적 생활양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의 한 정치 형태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지로 채택하는 정치 형태는 그 나라의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다.

본래 정치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그 사회의 역사적인 전통이나 국민성 또는 국민의 정치적 역량 등에 따라서 실지로 운용할 정치 형태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다같이 민주정치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하나같이 같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는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도화되므로

서 다양성있게 발전하는 데에 본래의 가치가 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술적인 이유로써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으로 분리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조직원리를 채택하는 것은 정부형태의 공통점이지만 특히 입법권과 행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권력을 엄격히 분리 독립시키는 미국식의 대통령제와 입법권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이 밖에도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제나 스위스의 회의제(會議制)등 특징적인 정부형태도 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러한 여러가지 정부형태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대통령제(大統領制)

대통령제가 대표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787년 제정된 연방 헌법에서 「몽테스큐」라는 학자의 권력분립론(權力分立論)에 입각하여 정부와 국회가 서로 독립되고, 독립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였다.

미국 연방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상, 하의 양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에 속하며, 행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속하고, 사법권은 연방 법원에 속한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不信任權)이 없으며, 또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해산권(解散權)이 없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구성과 성립에 있어서 서로 독립되어 있다. 한편 법원은 재판권을 가지는 이외에 소송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는 위헌법령심사권(違憲法令審査權)을 행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 밖에 연방상원(聯邦上院)은 대통령의 고급 관리 임명에 대한 승인권이 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성립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서로가 견제한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政局)이 안정되어 국가 시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국회의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며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서 독재에 흐르기 쉽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화합하지 않고 충돌할 때에는 이를 방지할 적절한 제도의 장치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나.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발달된 정부형태이다. 이 제도는 각국에 보급되어 각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주요한 특징은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여하에 그 존속이 의존되나 한편 행정부에게도 의회의 해산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당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되고, 국회 의원이 각원(閣員) 즉 장관도 겸임하므로 국회와 내각(행정부)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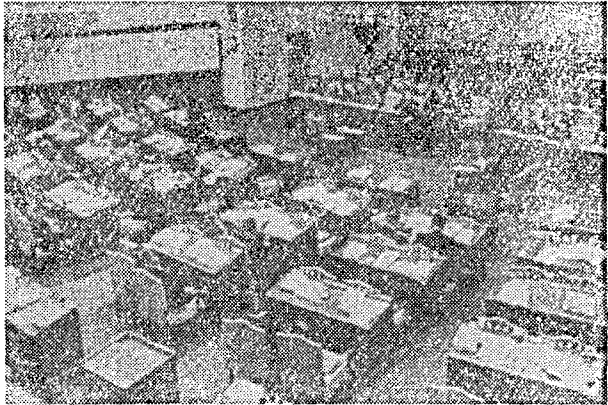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신임에 그 존속이 의존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적합하며, 내각이 책임정치를 하고 또 국회와 내각이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양당정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개의 조그마한 정당이 난립한 국가에서는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부가 국회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를 억제할 제도가 없으며, 국회가 정권을 장

악하기 위한 투쟁장소가 될 위험이 있다는 데 그 단점이 있다.

다. 간접 민주정치(間接 民主政治)와 선거제도(選舉制度)

현대국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는 달리 넓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으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접 민주정치란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대표를 뽑는 방식인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가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선거는 민주정치의 운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현대국가는 국민이 그 대표인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을 선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제도는 성년에 달한 모든 국민이 아무런 제한없이 참가할 수 있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간접 민주정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선거의 민주화를 기해야 할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이 선거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선거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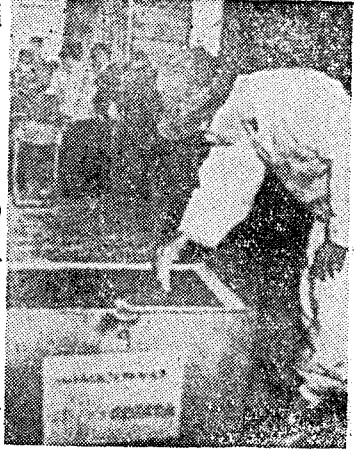
포기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서 공명선거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정당정치(政黨政治)

오늘날 민주정치라면 대의정치(代議政治)를 뜻하고, 대의정치라면 정당정치(政黨政治)를 뜻한다.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 함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意思形成)에 협조하고, 이것을 집약하여 국가 정치에 반영하려면 정당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조하고,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관을 구성하여 자기 당



비밀 공명선거는 곧 민주주의 권리이다.

의 정책을 실현하며, 국민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대중민주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시민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에서 대중정당(大衆政黨)으로 변천 발전 되었다. 우리 나라의 헌법도 이러한 방향에 순응하여 정당의 지위를 정하고, 정당이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이익을 공정히 대변하는 국민정당의 존립이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정당이 개인적인 정실이나 파벌

에 의한 도당(徒黨)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국민정당으로서 각 정당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여서 정권을 담당하여 나갈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는 풍부한 결실(結實)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무원(公務員)의 지위(地位)

민주국가에 있어서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국민의 공복(公僕 : Public Servants)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공무원은 어느 일당이나 어느 일파의 종복(從僕)이 아니므로 전체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거의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에서는 공무원을 관리(官吏) 또는 신하(臣下)라고 했으며, 그들은 군주의 하인으로서 군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국민에 대하여 호령하는 가혹한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공무원 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 활동이 인정된 특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초월하여 공정히 직무함으로서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지위는 공무원제도로써 보장된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지난 4반

세기 동안 우리 민족에 알맞는 민주주의로 성장 발전해 왔다. 특히 지난 번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채택된 유신헌법(維新憲法)은 한국적인 특징을 살린 우리 민족에 알맞는 민주헌법으로 이 땅에 토착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와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의 장점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대통령제이다.

그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서로 독립되어 있고, 헌법에 위헌심사권(違憲審査權)이 부여된 데에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국회가 단원제이고, 부통령제가 없으며, 국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으로는 조국 근대화의 과업을 완수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승평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두고 있으며, 복지국가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민주적 생활태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히 생활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자유(自由)와 책임(責任)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를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므로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성장을 해롭게 하는 사회적 요인이 적지 않다.

첫째, 민주주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요소는 자유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하여는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율(自律)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자율이란 자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행동을 하며,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유란 스스로가 승인한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며, 그 테두리를 벗어 났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지만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공동생활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은 마치 두 수레바퀴처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우리 나라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번 자유의 수난을 겪은 것도 우리가 책임을 모르는 방종(放縱)으로 흘러감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수난이라 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자유와 함께 또한 책임을 지면서 민주주의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근대화 정신(近代化 精神)

정치의 민주화는 정치풍토의 근대화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정선면에서 합리주의(合理主義) 또는 개인주의(個人主義)의 본뜻을 바르게 파악하여 이것을 생활속에서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權威主義)의 잔재를 몰아내고 또한 사회 경제면(社會經濟面)에서 생활양식의 근대화와 산업의 합리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발전된 근대사회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근대적 정신유산이나 사회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민주주의 실현이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민주주의의 성장을 해치는 전근대적 요인이 허다하게 도사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는 인간성의 존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관존민비(官尊民卑)의 관념이 남아 있어서 위정자는 자칫하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간혹 있었다.

또 민주주의는 자유와 함께 평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데 유교의 영향과 기타 사회적 폐습으로 말미암아 평등의 관념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문예부흥>이나 <종교개혁>의 정신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을 짧은 시일 안에 치러야 할 처지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한 근본과제는 각 분야에 걸친 근대화에 있다고 하겠다

다. 민주적 역량(民主的 力量)의 향상(向上)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민주주의 육성의 담당자도 역시 국민이다.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국민된 우리는 주권자로서의 위치와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여 각자가 우리 나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므로써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국민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치 즉 우민정치(愚民政治)로 타락되어 선동정치가가 국정을 어지럽혔던 예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민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을 참으로 인간답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의 문제는 어느 누구

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신의 문제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가정치의 문제나 공공적 문제에 대하여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생활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국가 정치의 문제나 공공적 문제를 외면하여 버리고 좁은 자기의 세계에만 파묻혀 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고, 인간의 협동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가 없고, 인간과 인간간의 협동과 상호부조가 없다면 인간의 생활은 보람이 없는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주권자로서의 자각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바른 정치에 이바지하는 결의(決意)와 자세(姿勢)를 가져야 하겠다.

라. 국가 활동(國家活動)의 민주화(民主化)

민주정치의 육성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아직 빈약한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임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민주제도 자체는 외국 것의 좋은 점을 수입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으나, 그 동안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위정자가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그릇되게 운용하여 국가를 위기에 몰아 넣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더구나 오늘 날의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만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활권(生活權)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수록 국가는 “법의 지배”의 정신을 잊지 말고 민주질서를 수선해서 지키므로써 민주주의 육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 개성(個性)과 인격(人格)의 존중

또한 민주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연히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다수의 의견의 결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모든 일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바. 규율(規律)있는 생활

민주적 공동생활이란 각자가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생겨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각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하여서는 안 될 일의 한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의 규율이란 이러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사회의 성원이므로 국가의 강제가 있건 없건 자진하여 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지키는 정신 즉 준법정신은 국가의 법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학교의 교칙, 단체의 규약, 회사의 정관 등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법이므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혹 내용이 좋지 않은 어떤 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고쳐질 때까지는 역시 법으로서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격언은 이

런 뜻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조국통일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의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 맡기고 국민 각자는 현 위치에 서 꾸준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밝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정신을 길러야 한다.

공산주의 정치이론과 실제

지난번 「공산주의 비판」 강좌에서는 「칼·마르크스」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고안해 낸 「공산주의의 철학과 사상」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골자만을 소개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이 무엇인가를 대강 훑어 보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칼·마르크스」는 물론 그 외의 여러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 정치이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본 다음 이들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한 내용과 모순점들을 비판하고, 오늘날 이같은 터무니 없는 공산주의 이론을 굳게 믿고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1. 「계급투쟁론」(階級鬪爭論)과 그 모순점(矛盾點)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계급투쟁론」이란 무엇이며, 그 모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공산주의 정치이론은 인류역사가 재산을 갖지 못한 무산계급(無産階級) 즉 노동자들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산계급(有産階級) 즉 고용주들 사이의 투쟁의 역사이며, 이 투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原動力)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소위 「계급투쟁론」으로 부터 출발한다.

이 「계급투쟁론」을 다시 알기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인류사회는 남을 착취하는 계급과 남에게 착취를 당하는 두 계

급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두 계급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줄곧 싸움과 대립만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부터 이 두 계급 즉 착취를 하는 계급인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과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간의 싸움은 더욱 더 치열해 졌으며, 이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이러한 대립과 싸움은 더욱 더 치열해져 끝내는 착취를 당하기만 하던 노동자 계급이 폭력으로 자본가 계급을 넘어뜨리고 정권을 탈취하게 되므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이 바로 사회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계급 투쟁론」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대립관계로만 생각하여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단정한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두 가지 집단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재산이 있고 없고 간에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해 나간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사회의 발전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단결된 힘과 사회발전을 위한 목적의식(目的意識)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더우기 고도로 발달된 근대 선진 자본주의 경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한 사회시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발달되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 결국 계급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실정인 것이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사회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직 인간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고 밝은 면은 외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현재에도 모든 힘을 다하여 균형된 국가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이익(利益)이 바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계급의 이익이 사회전체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지니와 우리 사회나 국가에는 일정한 계급의 이익 외에도 계급을 떠난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민족의 이익 또는 인류 전체의 이익 등 보다 숭고하고 높은 이익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즉 생활에 궁핍을 느끼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집결시켜서 정권탈취에 동원되도록 하며,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의 반발심을 조장시켜서 사회질서의 파괴에 동원되도록 선동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세째로, 「계급 투쟁론」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소수의 자본가 계급과 소수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사이에는 많은 중간계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한 점이다.

더우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중간계층이 자본가 계급과 손을 잡고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 볼 때 이 낡아빠진 이론을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성경처럼 믿고 떠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이론을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 「폭력혁명론」(暴力革命論)과 그 모순점(矛盾點)

그러면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혁명론」이란 무엇이며, 그 모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생산력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생산과정에서 여러가지 모순이 생겨나므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방법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킬 각오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진행시켜야 하며, 자본가들로 부터 모든 생산수단과 권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가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록 노동자들이 독재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폭력혁명론」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은 무엇이며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무자비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력」을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의 모든 혁명이 낡고 부패한 정치제도 때문
 에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경우에 일어났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도 다만 「폭력」을 혁명의 수단
 으로서 일시적으로만 사용했을 뿐이지 일단 낡은 정치제도를 무
 너뜨린 후에는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에도 자기의 적을 없애버리므로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해서 폭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에서의
 「스탈린」의 공포적인 피의 숙청, 중공에서의 문화혁명에 의한 폭
 력 행위, 그리고 북한에서의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무자비한 숙청 등의 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았다.



인민 재판 광경

둘째로, 이 「폭력혁명
 론」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권을 빼앗은 사실들을
 합리화(合理化)시키고 정
 당화(正當化)시키기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

예를 들면,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러시아 혁명」을 합리화시
 키고 나아가서는 후진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도록 선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사회를 무질서한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으므로써 세계적화의 야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 폭력혁명
 이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폭력혁명론」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도 합법적인 선거절차를 거쳐서 수립된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해

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이나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믿으며 상대방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무자비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이 되게끔 만들어 버린 것이다.

3. 공산국가의 현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공산국가의 정치 현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존·스튜어트·밀」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를 비유하는 글에서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족한 바보가 되는 것 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은 인격(人格)이나 개성(個性)의 성장과 발전에 있는 것이지 인격이나 개성을 무시당하고는 인생의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인권(人權)에 속하는 여러가지 자유를 희생시키고 겨우 식생활(食生活)에 만족하는 동물과 같은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없음은 물론 거주 이전 그리고 여행의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양심(良心)의 자유나 신앙(信仰)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파업(罷業)이나 임금인상의 요구권 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산국가의 정치적 현실이 어떠한가를 공산국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정치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공산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권력구조(權力構造)에 대하여 설명하

기로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국가의 권력구조의 특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라는 것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의 행사는 공산당 가운데에서도 핵심분자(核心分子)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국」(政治局)이나 「정치위원회」(政治委員會)에서 공산당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그것도 다시 당에서의 서열이 제 1위인자 (즉 소련의 경우에는 「브레즈네프」, 중공의 경우에는 모택동,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 등)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일인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산당이나 독재자가 갖는 권력이나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 또는 행정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은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산당이나 소수 독재자에 대하여 항상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국가권력이 당이나 중앙기관에 집중되기 때문에 완전히 관료주의화(官僚主義化)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 국가의 선거제도(選舉制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의 입법기관(立法機關)인 소위 「최고회의」(最高會議)는 사실상 이미 공산당이나 소수 독재자가 결정한 사람들을 마치 「인민들의 의사」인 것 같이 가장하여 이를 의결하는 허수아비 구실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기관의 선거 조차도 각 선거구(選舉區)에서 단지 1명의 입후보자만 내세워 찬성 또는 반대만을 유권자에게 묻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1명의 입후보자 조차도 사실은 공산당의 지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공산국가들의 선거제도를 실개 국가의 실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 1936년 소위 「스탈린」 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간접공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 후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제도를 모방하였으나 이 때의 입후보자의 추천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았고 투표에 있어서도 기권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중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직접 뽑는 직접 선거제도를 택하지 않고 간접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 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의 대의원(代議員)을 최하 단위의 선거대회로 부터 몇 단계를 거쳐 상향식(上向式)으로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2년 10월에 선거결과를 상식으로서 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투표율100%, 찬성율 100%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때의 선거에서 종래의 「흑백함 투표제」를 폐지하고 입후보자를 반대하는 경우에만 X표를 하고 그대로 놔두면 찬성이 되는 투표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세째로, 공산국가에서의 법률(法律)



과 사법(私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 보겠다.

공산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고, 법률 자체도 사회주의적 목적 다시 말하면 당의 방침에 종속되며,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를 잘 대변해 주는 말로서는 「스탈린」시대의 소련의 검찰총장이며 법이론에 밝았던 「비신스키」의 말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법의 형식적인 지배력은 공산당의 정책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또 「러시아」 혁명의 주동자였던 「레닌」은 『법정은 공포와 전혀 인연을 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약속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다같이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의 법정에서 얼마나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산국가에 있어서 각급 재판관은 그 자신이 공산당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산당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관에 의하여 받는 재판의 결과는 너무나 변한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나마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비밀재판」에 의하여 처형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재판에 의한 피의 처형은 소련의 경우에 「스탈린」시대의 비밀경찰의 두목이었던 「베리아」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베리아」 역시 비밀재판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고 허무하게 살아져 갔던 것이다.

요컨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이 없으며, 재판소가 공산당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용 기관이라는 사

실은 공산세계 법조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법률가로 인정받고 있는 소련의 「니콜라이·끄릴렌코」의 말을 인용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즉 그는 『그 어떠한 법률도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설사 그러한 법령이 있을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공산국가에서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공산국가에서의 인간의 기본권은 법률 및 사법기관이 공산당 정책에 종속되고 공산당이나 소수자의 독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는 이상 유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법률학자인 「한스·켈젠」이라는 사람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자유 뿐만 아니라, 간섭을 받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유도 포함하는 자유다』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현대의 모든 법률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이나 소수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공산국가의 헌법에서도 형식상으로는 「언론, 출판, 시위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이익에 적합하고 또한 사회주의 체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로자의 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당의 이익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신

문이나 출판물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정부가 관장하며 검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출판, 통신기관에는 당의 검열단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일당독재 국가이며, 이같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정한 사회인 것이다.

주변정세와 우리의 안보

—6·25 23주년을 맞아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1. 머리말



한 가정이 살아가는 데도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꾸준히 닥쳐오듯 한 국가나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독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안팎의 도전(挑戰)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번영의 큰 길로 나서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 민족의 슬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민족 중흥과 조국통일이라는 지상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전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의 이 과업이 크고 중요할 수록 그 만큼 큰 도전을 받게 마련이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내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

달성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전요인(挑戰要因)을 분석해 보면 외부적(外部的)인 도전과 내부적(內部的)인 도전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적인 도전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週邊情勢)가 주는 도전과 또한 전세계 적화(赤化)를 내세우고 한반도를 소위 세계적화를 위한 극동초소(極東硝所)라고 부르짖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리고 내부적인 도전은 우리의 국민총화(國民總化)를 저해(阻害)하는 여러 가지 여건(與件)인 것이다.

이같은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도전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고 상호 교호작용(交互作用) 즉 서로 원인(原因)이 되고 결과(結果)가 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도전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 할수록 외부적인 도전요인도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내부적인 도전요인이 약화되면 될수록 외부적인 그것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인 도전자들은 이러한 교호작용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우리의 내부적인 도전요인을 부채질하고 강화하려고 교묘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외적인 도전요인을 제거하고 우리의 지상과업을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의 합일체(合一體)인 정부의 시책 바탕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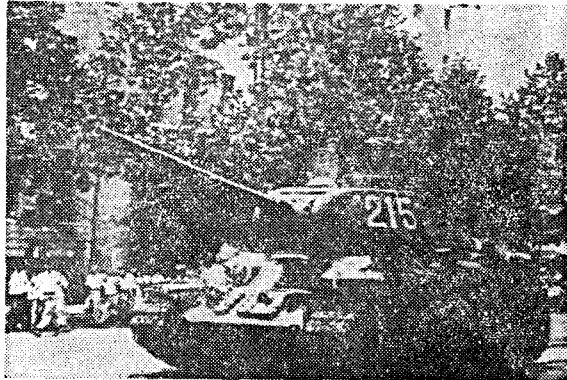
2. 주변정세의 도전

한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문제되는 것은 항상 힘의 균형관계(均衡關係)인 것이다. 그것은 지구상 어디엔가 진공상태가 생겨나면 태풍이 일어나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드시 국제사

회에 힘의 공백상태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학관계(力學關係)는 어쩌면 한반도가 그 표본(標本)일런지도 모른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과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의 힘이 역학관계에서 볼 때 위도상의 38도 선에서 팽팽하게 맞선 것이 우리 민족의 분열을 가져온 비극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균형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균형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북한의 지원 세력인 소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리의 지원 세력인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먼 거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균형의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씨앗을 결정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어쩌면 미국의 대외정책적 실패였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1950년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키고 약 500명 정도의 군사 지원단만을 잔류시켰으며, 더우기 한반도를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소위 「에치슨·라인」을 선언하므로써 한국을 아세아 극동지역에서 결정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내부적인 도전을 감당하기에도 힘겨

운 처지였으니 단독적인 힘으로 세계적화의 야욕으로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던 소련의 세력을 막아낼 힘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포착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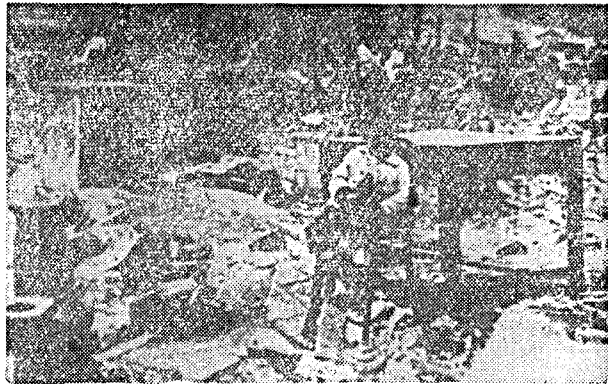


〈6·25 남침시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에 입성한 북한 공산군들〉

련의 「스탈린」은 재빨리 그의 충실한 앞잡이 북한 공산집단으로 하여금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전쟁을 도발하게 하였던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재빨리 「유엔」안보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에 「유엔」경찰군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을 참전시켰던 것이다. 한국에다 「유엔」이라는 힘이 가해지자 우리 국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던 열세를 면하고 38도선을 돌파하고 해산진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전자들이 열세에 물리자 새로운 세력인 중공이 도전자의 대열에 힘을 가산하므로써 한국전쟁은 소련, 중공, 북한 대 한국과 「유엔」의 전쟁으로 되어 전진 후퇴를 거듭하는 동안 수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새로운 힘의 역학관계는 최초의 전쟁 발발선인 38도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에서 휴전이란 형태로 새로운 균형을 찾았던 것이다.

휴전선에서 균
형화된 힘은 60년
대 말기와 7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
서 급격히 균형이
재편성되지 않으
면 안되는 사태를
야기하였던 것이
다. 동·서 양진영



아빠와 엄마를 잃고 돌봐줄 사람도 없이
폐허위에 홀로 앉아있는 어린이

의 급격한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미국, 일본, 소련, 중공이라는 사각(四角)관계로 재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1972년 「닉슨」 미국대통령의 극(劇)적인 중공방문으로 개막된 동·서 양진영의 화해 「무드」는 강대국들이 종래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던 대립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오로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과 우방을 구별치 않고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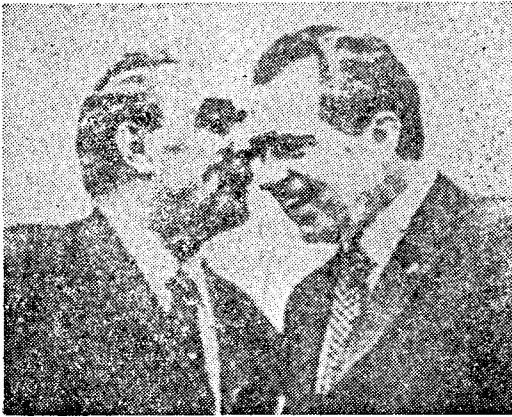
중공이란 무한정 넓은 시장(市場)에 눈독을 드린 일본은 지금까지 같은 우방국으로서 선린관계(善隣關係)를 유지해 오던 자유중국과의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 팽겨치고 중공 일변도로 전환해 버리지 않았던가?

오는 8월에 있을 예정인 「다나카·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수상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정치, 경제적 분위기는 더 한층 온화(溫和)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17년만이 될 일본 수상의 소련 방문은 미국, 중공, 소련 등 인접해 있는 3대 열강국들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일본정부 정책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밖에 중동(中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처를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셈이 일본의 소련접근의 또 하나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다나카」 일본 수상은 이번 「모스크바」 방문 중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평화조약에 관한 협상을 새로 진척하게 하며, 또한 「시베리아」의 자연자원 개발에 일본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공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구인 「일·소 공동경제위원회」는 「다나카」 일본 수상의 「모스크바」 방문때까지 적어도 세가지 주요한 공동개발계획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세가지 사업계획은 첫째, 「투멘」에서의 석유 개발 둘째, 「야쿠츠크」의 천연 「가스」 개발계획 그리고 셋째로, 「사할린」에서의 천연 「가스」 및 석유 개발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과 소련간에 있어서는 「시베리아」의 천연 「가스」를 미국

에 공급하는 1백억「달러」 상당의 거대한 개발계획 협정이 소련정부 당국과 미국 실업인들 간에 조인되었다. 이 계획은 「시베리아」의 「야쿠츠크」 지방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 「푸르만스크」까지 3천2백 「킬로미터」의 파이프를 운반하여 여기서 액체로 만든 다음 10만톤급 「가스」운송선 20척으로 미국 서해안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소련 「브레즈네프」



미국을 방문중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6월 18일 백악관에서의 환영식이 끝난 후 미국 「닉슨」 대통령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의 미국 방문 때는 양국간에 현재 해결책을 찾고 있는 비료공장 전선문제도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는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새로운 사극(四極)을 이루면서 그들 국가 이

익을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우방 약소국가들도 기꺼이 재물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는 1970년대의 정세가 아니라 1800년대의 한반도 정세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 없다.

이럴 즈음에 미국 해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해군지 4월 호에서 소련과 중공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약 소련과 중공이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터는 필연적으로 한반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은 우리에게 무척 의미 깊은 문제

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1800년대에 우리는 우리 국토가 자신의 전쟁이 아닌 남의 나라의 전쟁터로 되므로써 전 민족이 희생되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청·일전쟁이 그러하였고, 노·일전쟁이 또한 그러하였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열강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틈바구니에서 자기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힘을 기르고 축적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통일이 5천만 민족의 지상과업(至上課業)인 까닭이 있는 것이며, 국력을 조직화하여 일로 통일로 매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當爲性)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 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를 통하여 남북의 접근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3. 북한 공산집단의 도전

세계적화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국제 공산주의의 극동초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한반도의 국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없이 걸으며 들어내어 밝혀왔고, 또한 그들 틈나대로 실천을 해왔지만 그 때마다 저지되었다.

즉 합법(合法), 비합법(非合法) 그리고 폭력(暴力), 비폭력(非暴力)을 같이 활용하는 소위 배합투쟁(配合鬪爭)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 그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이 한반도에서 적용해 온 적화전략(赤化戰略)은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전쟁로선>(人民民主主義 革命戰爭路線)이다. 이 로선은 전개과정(展開過程)에 따라서 4단계나 5단계 또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전술을 실제로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세분화시키느냐 하는 구별에 불과하다.

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전쟁로선>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단계는 대중동원의 단계(大衆動員의 段階)이고, 둘째 단계는 유격전의 단계(遊擊戰의 段階)이며, 셋째 단계는 격멸전의 단계(擊滅戰의 段階)이다. 대중동원의 단계에서는 지하당 조직을 통하여 사회를 교란시키고 경제를 교란시킨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와 경제는 등어리가 맞붙어 있는 쌍둥이와 같아서 사회를 교란시켜도 경제가 교란되고 경제를 교란시켜도 사회가 교란된다.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에 침투해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폭력파업(暴力罷業)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파업은 항상 합법(合法)을 가장한다. 예컨대, 전국적인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운수노조(運輸勞組) 같은 것이 파업을 한다면 수송은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도시의 공산품이 농촌으로 수송되고 농촌의 농산품이 도시로 수송되어야만 하는데 수송이 중단됨으로써 농촌의 공산품 값과 도시의 농산품 값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므로써 물건이 귀하게 될 것을 예상해서 물건을 휩쓸어서 사게 되는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품귀현상을 부채질한다. 이렇게 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사회

계층이 나뉘어 진다. 이때 없는 자의 계층에 침투한 공산분자들이 선전과 선동을 통하여 군중을 조직화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몰고 간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극단적인 폭동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동작전은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우리나라 도처에서 남로당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대구 10.1 폭동사건, 제주도 4.3 사건, 영천 농민사건, 안양사건 등이 그 것이다. 이처럼 폭도와 같이 변하는 군중현상을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대중동원이라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러한 대중동원을 목표로 삼고 경제교란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폭도화된 대중을 장악하여 한 지역을 적화하고 그 곳을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모택동은 이 거점을 농촌에 확보하고 점차 도시를 휩싸야 한다는 주장이며, 월맹의 「보·구엔·짚」은 월남에 거점을 확보하여 북으로부터 월맹 정규군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위 동원된 대중을 조직화하여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 때 사용할 무기를 미리 은닉해 두거나 현지 무기고를 습격하여 탈취하거나 비밀통로를 통하여 외부 공산세력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한다. 또한 동원된 대중이 흔히 투쟁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외부 공산세력으로부터 잘 훈련된 유격대원을 침투시켜 유격전으로 몰고 간다. 원래 유격전은 대부대가 파괴되었을 때 남은 소수부대가 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적의 전투력을 분산 약화시키는 것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유격전을 계속 적용한다. 유격전은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 유격전을 벌이는 측과 유격전에 대항하는 측간에 비용과 노력의 차이가 격심한 것도 또한 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이 유격전은 끈질기게 오랫동안 버티어나가는 지구전(持久戰)으로서 끝없는 전쟁으로 이끌어 가서 정

부군과 국민이 지킬대로 지쳐서 힘이 빠져버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충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도처에서 이러한 유격전을 공산주의자들이 적용하였는데, 이 때에는 평양 북쪽에 있는 강동정치학원에서 훈련된 무장유격대 약 4,500명이 오대산을 전진기지(前進基地)로 하여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유격전구, 한라산 유격전구를 설정하고 지리산과 한라산을 거점으로 하여 50년까지 유격전을 전개하였었다. 이러한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군경이 동원되고 그래도 모자라서 일선에 있는 국군의 3분의 1을 이 공비소탕작전에 돌렸던 것이다. 이러한 틈을 타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격적인 소위 격멸전의 단계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휴전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하당을 조직할 목적으로 수많은 간첩을 육로로, 바다로 그리고 제3국을 통하여 무수히 침투시켰으나 우리 국민의 철통같은 반공의식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국력 그리고 월남전선에서의 실전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군경 수색대

경험에 의한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에 당황한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의 힘을 측정하기 위한 전술로서 무장유격대를 남파시켰으나 그 역시 한국민의 투철한 반공태세와 군 및

경찰에 의해 완전히 소탕되어 버리므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통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극적인 평화공세로 그들의 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때에 국민의 반공태세가 허술하여 산간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목숨바쳐 신고하고 소탕작전에 앞장서는 대신 그들 유격대에게 협조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던들 60만 대군을 다 풀어 놓아도 그렇게 철저하게 소탕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은 계속적으로 여러 지역에 동시적으로 무장유격대를 침투시켜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벌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소위 「유격대와 인민의 관계는 물과 고기의 관계와 같아서 물이 없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격대는 자멸한다」는 유격전의 기본원리를 체험을 통해서 철저히 알게 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앞으로는 한국내에 지하당을 조직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서막으로 한 대한민국 주도하의 남북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의 힘을 의식하였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도 평화공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저들 나름대로 면밀히 계산된 목표가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전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회담 이후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일하려는 이 마당에 예비군 훈련은 왜 자꾸 계속하느냐고 불평하는 자 있다면 그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자이다. 남북대화를 하면서 반

공은 왜 주장하느냐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무장 해제 하는 자이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남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해이된 자 있다면 그도 역시 스스로 무장 해제한 사람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가 스스로 무장 해제하도록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화를 하려면 반공법이니 반공활동을 그만두고 내부정비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열리고 있는 적십자회담을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정치회담으로 이끌어가자는 저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과연 북한에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보고 자기들 공산당을 인정하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150만의 노동적위대와 70만의 붉은 청년근위대 그리고 40만 이상의 정규군, 북한 총 예산의 15%나 되는 6억2천5백여만불의 군사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그들이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자, 남북 군대를 10만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외국으로 부터 무기 반입을 중지하자, 미국을 포함한 외국군대를 철수시켜라, 「언커크」를 해체시켜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등 갖가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는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모든 형태의 도발과 상호비난을 중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통일혁명당의 목소리 방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전과 조금도 다름 없는 비난방송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평양방송을 통하여 과격한 비난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간산업에 간첩들을 침투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남북회담을 통한 평화공세를 하고 있는 저들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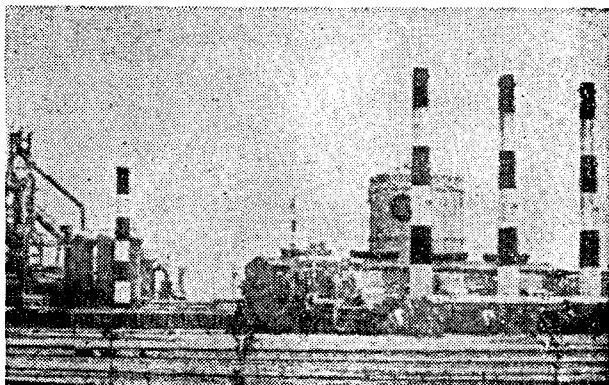
4. 총력안보(總力安保)

북한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5천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조국의 성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철통같이 단결된 안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전은 전선없는 도전이다. 따라서 전방과 후방이 없는 도전인 것이다. 군과 민간의 구별없는 도전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전선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국방업무인 것이다.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전은 조직화된 물리적인 국력의 총 동원을 요하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정신적인 총화를 요구하는 도전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은 첫째로, 국민총생산(G. N. P)으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국력의 신장이다.

이러한 과업은 주어진 여건과 자원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창의력(創意力)을 최고도로 발휘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일 준공된 포항 종합제철 제선시설(製銑施設)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며 창의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80년대의 100억불 수출과 국민소득 1,000불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며, 그 만큼 우리의 안보는 튼튼해지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물리적인 국력의 고도화는 국민의 정신적 총화 바탕 위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총화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로 느낄 수 있는 일체감(一體感)의 바탕 위에서만 조성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주위에는 일체감을 깨트리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흩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부적인 도전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부적인 도전요인을 슬기롭게 처리할 때 비로소 외부적인 도전요인도 쉽사리 극복될 것이다.

내부적인 도전요인을 제거하는 과감한 작업은 10월유신을 통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은 우리의 지도자나 법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 국민 스스로가 다스리는 정신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기풍이 조성될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는 이기주의(Egoism)란 커다란 함정이 있다. 이 함정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루 속히 구출하여야만 하겠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Individulism)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과 나라를 함께 위하는 주의(ism)이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지만 개인주의는 나와 남과 나라가 함께 번영하게 하는 것이요 온 국민이 일체감에 의하여 총화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조국의 통일을 원한다면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내 동포를 구출하고 나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번영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너와 내가 없이 모두 함께 총력안보체제 구축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통일로 가는 평화외교(平和外交)

—6.23 박대통령 특별성명 해설—

1. 머리말

지난 6월 23일 박대통령은 7개 항목으로 된 역사적인 평화통일 외교정책(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지향해 나갈 통일외교의 지표(指標)를 국내외에 천명(闡明)했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박대통령의 영도하에 온 국민이 땀흘려 이룩한 조국 근대화의 바탕 위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활짝 평화외교의 문호(門戶)를 개방하는 영단(英斷)이며, 그 동안 남북대화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 평화의 압력을 가하므로써 조국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포석(布石)이요 결단(決斷)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의 외교방향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번 박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천명이 어떠한 배경과 필요성에서 나왔으며, 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살

펴보기로 하겠다.

2. 평화통일 외교정책 천명의 필요성과 배경

우리는 2차대전 후에 근 반세기에 걸쳤던 일제 식민지로서의 굴레를 벗고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 민족해방은 뜻밖에도 타의에 의한 국토의 양단과 민족의 분열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비극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생각하면 타의에 의한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은 일본에게 주권을 박탈당했던 지난 날의 민족사가 그러했듯이 우리 민족이 자주(自主), 자립(自立), 자위(自衛)할 수 있는 자주역량(自主力量)을 비축하지 못한 데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후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편의적으로 설정했던 38도선은 남북분단의 장벽으로 굳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남북분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38선의 철폐와 통일민주 정부의 수립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미·영·소 등 세나라 외상(外相)들이 우리 한국문제의 처리를 위해 회합한 1945년 12월의 소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뜻밖에도 미·영·소·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고, 그를 위한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를 협의할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독립정부 수립을 굳게 믿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놀라움과 분노는 매우 컸으며, 온 국민이 거족적으로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반탁」(反託)의 입장에서 「찬탁」(贊託)의 입장으로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버림으로써 반민족적 처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1946년과 1947년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열렸던 「미·소공동위원회」는 소련 점령군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고, 따라서 임시정부일 망정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최초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유엔」 총회에 회부되어 1947년 11월 14일 「유엔」 감시하에 전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그 총선거의 실시 및 감시를 위한 「임시한국위원단」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초 우리 한반도에 파견된 「유엔」 한국위원단은 총선거 실시의 준비를 위해 북한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그 역시 소련 점령군과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입북(入北)이 거부되므로써 전 한반도에 걸친 자유 총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두번째의 절호의 기회도 또 다시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直視) 하고 「유엔」 한국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만의 총선거 실시안을 결의하여,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제 3주년을 기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우리 대한민국은 48년 12월 12일 「유엔」에 의해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받기에 이르렀고 명실상부하게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사의 정통성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미·소공동위원회나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이 공산주의 세력의 방해로 빛을 보지 못한 사실이다.

이렇게 평화통일의 길을 외던했던 북한 공산주의 세력은 그후 평화공세의 위장속에서 계속 남침준비를 해오다가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고요한 일요일 새벽을 기해 무력남침을 감행하므로써 그들의 기본전략이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통일이었음을 행동으로서 입증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6.25남침으로 막대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희생당했으며, 또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가능성은 여지없이 짓밟혔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동족상잔의 참화가 컸던 만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더욱 강렬해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비극을 겪지 않고 빨리 평화통일을 이룩코자 하는 우리의 염원은 날로 불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집단은 6.25 동란 후에도 계속해서 무력적화통일이라는 허망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간첩과 무장 「계딜라」를 남파시키는 무력도발을 일삼아 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추이(推移)를 직시(直視)한 박대통령은 이 땅위에 또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사전에 방비하며 평화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중지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개발과 발전과 창조」의 경쟁에 응해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아래 1970년 광복절 제 25주년 경축사에서 「8.15선언」을 표명했으며, 이어서 71년 8월 12일에는 순수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므로써 남북간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며, 계속해서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아래 1972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어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남

북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하므로써 본격적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서, 자신의 슬기와 역량으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자주적 노력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바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강렬한 민족의지의 발로(發露)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대화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대화기간 중에도 우리에게 대한 비방과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한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의 선결만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불신(不信)의 해소(解消)와 교류(交流)는 커녕 오히려 불신의 심화(深化)와 긴장의 고조(高調)를 낳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일이기 때문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현실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가운데 주체적으로 과감한 정책의 전환을 단행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외교정책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잠깐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 나라는 지리적인 위치로 해서 언제나 주변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특히 주변 국제정세의 격동기에는 대개의 경우 그 여파가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때, 오늘날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 우리는 결코 강건너 불을 보듯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2차대전후의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의해 분단을 강요당했던 경험을 가진 우리로서는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조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후의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화해와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강대국들이 평화공존하려는 새로운 세력균형의 모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에게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겨 주었던 열강들은 이제와서는 이같은 분단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 우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현명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는

첫째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피동적으로 적응하므로써 슬한 민족적 불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난 날의 불행한 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비록 우리의 민족분단이 열강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통일은 우리의 자주적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현상유지를 전제로 하는 평화공존의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어떻게 현상타파를 전제로 하는 자주적 통일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양자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통일을 포기해야하고,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오늘날의 국제조류

를 거부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병행해서 통일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족통일은 우리의 목표인데 반해 국제정세에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은 바로 이러한 판단 아래 평화통일의 노력을 적극화시키는 일환책으로서 보다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높은 통일전략의 표명(表明)인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의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될 것은, 이번에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국력신장과 10월 유신으로 다져진 국내 안정기반의 강화 및 국력의 조직화에 의한 조직체제가 뒷받침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내용

가. 평화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업(至上課業)

해방 이후 미·소의 강대국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된 뒤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불행이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와 무력도발로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배반과 도전속에서도 우리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어 마침내 「8.15선언」과 남북

적십자회담 그리고 7.4공동성명에 의한 남북대화로 결실되어 민족 통일사에 새로운 장(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번에 천명된 평화통일외교정책은 이러한 그 동안의 노력을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차원에서 추구하려는 역사적인 일대 영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영단의 기초(基調)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경주(傾注)되어 나가 는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大前提)

병을 앓아 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며, 전쟁을 겪어 본 민족만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안다.

우리는 6.25동란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8.15선언이나 남북대화의 주도 그리고 10월유신의 영단도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평화통일에 대한 집념(執念)의 표명인 것이며, 이번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바로 이러한 근본정신에서 나온 일대 영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위협요인(威脅要因)은 제거되어야 하며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중상(中傷)하거나 비방(誹謗)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다. 성실(誠實)과 인내(忍耐)로서 남북대화 계속

이번에 내외에 천명한 평화통일외교정책은 평화공존의 추세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대 영단인 동시에, 그 동안 우리의 성

의와 인내로서 계속되어 온 남북대화의 바람직한 진전을 촉진시키는 조치이다.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과 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키며, 그에 앞서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① 자주통일 ② 평화통일 ③ 민족의 대단결 이라는 3대 통일원칙이다.

이같은 통일원칙에 비추어 볼때,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불신과 오해를 해소시키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합리적인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비현실적이고 가장 어려운 「군사문제, 정치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와 주장으로 남북대화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성실과 인내로서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묵인(默認)

5. 16혁명으로 민족 회생(回生)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경제건설의 기적을 이룩하여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창의와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10월유신을 단행하므로써 「세계속의 한국」으로 비약해 왔다.

이와같이 「세계속의 한국」으로 뛰어오른 우리는 마땅히 국제정

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세계사에 기여할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국제정세의 조류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의 방향으로 격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국제정세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외교정책을 능동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차원높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참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디까지나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잠정조치(暫定措置)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마. 북한과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 묵인(默認)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한국위원단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비록 「유엔」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의사라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우리의 조국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서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우리는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우리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첫째로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며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며, 둘째로 앞에서도 설명

한 바와 같이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우리의 국제협조정신의 발현(發現)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유엔」정책은 어디까지나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잠정조치이며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바.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門戶)개방

앞에서도 수차 말한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정세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긴장완화 추세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우리는 꾸준히 대중립국의교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와 적대하지 않는 공산국가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이러한 다변외교(多邊外交)의 문호를 더욱 개방하여 보다 전진적인 자세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에서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소련, 중공을 비롯한 여하한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이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진취적인 개방외교의 일대 영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방외교는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이 대전제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 우방(友邦)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관계개선의 정도와 범위 안에서 정립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 평화 선린(平和 善隣)이 대외정책의 기본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평화 선린에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전항에서 제시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게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도 이 기본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외교의 능동적 전환은 그동안 우리와 밀접한 협력관계와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우방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에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움될 것이다.

우리가 우방 제국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평화 선린의 개방외교(開放外交)를 펴 나간다면 이는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威信)과 긍지(矜持)를 드높이면서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름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4.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성명의 의의(意義)

가. 세계평화에의 기여(寄與)

이번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을 우선 세계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민족분단이라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왔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조류가 냉전체제하에서 대결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나라 외교는 강대국 외교의 그늘 아래에서 그 주체성을 높일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주적 역량을 길렀고 10월유신에 의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살길을 개척해 나가는 슬기와 용기를 북돋은 우리는 이제는 옛날의 「아시아」 변방의 중소국이 아니라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크고 넓은 안목으로 우리의 주변정세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이념만을 내세웠던 외교전략은 퇴색해 버리고 그 대신 다극화(多極化)된 열강들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속에서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치열한 실리추구(實利追求)의 외교경쟁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민족 통일의 지상과업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에 박대통령은 우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외교 전략을 창안, 이를 내의에 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정책방향의 세계사적인 특성을 간추려 보면

첫째,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둘째,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모든 국가의 우리에게 대한 문호 개방을 적극 촉구하였다.

셋째,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이 오직 평화와 선린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평화 선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나. 자주적 평화통일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改善)

평화통일외교정책 천명의 두번째의 의의는 민족적 견지로 보아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 방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추천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가 놓여 있는 국내외의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민족적 자각(自覺)에서 비롯된 주체적 정책의 결정이다.

여기서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있어서 그 민족사적인 특성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임을 내외에 거듭 천명하였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정착(定着), 유지(維持)할 것을 천명하였다.

셋째, 남북대화의 효과적인 추진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네째, 북한과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동시 참석을 묵인한다고 밝히므로써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正統性)을 뚜렷이 하였다.

다섯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세계 모든 국가와의 개방외교를 천명하므로써 우

리 나라의 자주적 역량과 자신 그리고 민족적 위신과 긍지를 드
높였다.

이상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번 평화통일의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의 민족주체성과 긍지를 드높였을 뿐 아니라, 명분이
나 이념에 얽매어 다소 현실성을 잃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을 실리적인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점이며, 바
로 여기에 이번 평화통일의외교정책 천명의 민족사적 큰 의의가 있
는 것이다.

5. 총력외교시대에의 우리의 대응자세(對應姿勢)

평화통일의외교정책에 관한 박대통령의 특별성명은 우리에게 총
력외교시대가 도래(到來)하였음을 일깨워 주었다.

즉 박대통령의 이번 영단으로 머지않아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외교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첫째로, 북한이 우리와 같이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
이며,

둘째로, 북한이 우리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될지도 모르
며,

세째로, 우리 나라가 모든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므로써
공산국가 국민들도 언젠가는 우리 나라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될
것이고,

네째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
호를 개방하므로 우리도 그들 나라에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국제외교의 격변기에 처하여 우리는 어떻
게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가. 국론통일로 총력외교를 다짐하자.

우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을 국내외에 천명하게 만든 최근의 국제정세를 주시(主視)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며, 국론을 통일하여 총력외교를 전개하는 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지상과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박대통령은 『현실을 직시(直視)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므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에 천명된 평화통일외교정책인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회구하는 우리 국민은 과감히 국론을 통일하여 국민의 단결된 총화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총력외교의 첫 출발이다.

나.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견지(堅持)하자.

우리가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으로 북한이 우리와 같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긴장완화와 국제협조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우리가 적극 기여하는 한편,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우리의 능동적인 조치인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북한의 「유엔」이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급히 단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절대로 삼가야하며 그런 사람에게는 평화통일의교정책의 참뜻을 깨우쳐 주는 한편 유구한 5천년 민족사 위에 빛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긍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국민총화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 유신한국을 세계에 선양(宣揚)하자.

우리는 평화통일의교정책의 천명으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우리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며, 그들 나라에게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다변외교(多邊外交)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민의 주체성있는 대응(對應)이 요청 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우리 나라의 연출가와 경제인 등 3명이 소련당국의 「비자」를 받아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몇일 전에는 소련적십자사가 「사할린」에 있는 우리 교포를 송환할 것을 정식으로 밝혔고, 그리고 머지않아 소련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 대표선수들이 소련의 초청을 받고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超越)해서 공산국가들과도 선린외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다변외교시대에 즈음하여 민족 주체성에 입각하여 유신한국(維新韓國)의 선양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할지도 모르는 공산국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평화원리의 미덕(美德)을 보여줌으로써 유신 한국의 국위(國威)를 선양하고 참다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외교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국력배양으로 평화통일외교를 뒷받침하자.

평화통일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분단의 고통을 덜어주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대화가 시작된지 극 2년이 되지만은 그 성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먼 것이 사실이며, 이런 것을 볼때,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긴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의 지상과업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국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국력배양으로 남북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간의 경쟁은 새로운 차원에서 치열해 질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건설과 국력증강의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나 「유엔」에서의 경쟁 등 다각적인 외교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그 어떠한 경쟁이던 간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

력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국력배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첫째도 국력, 둘째도 국력이다. 우리는 민족 중흥을 지향하는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국력배양의 가속화(加速化)와 배양된 국력의 조직화(組織化)에 더욱더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의 농촌

1. 토지개혁(土地改革)



이른바 협동농장이라는 북한의 집단농장은 농민들을 임금노동자로 만들어 버렸다

본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個人所有)를 인정하지 않고 <국유화(國有化)> 또는 <집단화(集團化)>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도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농업집단화(農業集團化)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토지개혁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5일에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소위 무상몰수(無償沒收)와 무상분배(無償分配)의 방법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집단화를 실시하지 않고 농업집단화 실시 이전단계로서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하여 농토(農土)의 면적(面積)이 부족한 데다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욕(所有慾)과 애착심(愛着心)이 다른 어느나라 농민들 보다 강한 편이므로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이같은 욕망(慾望)을 충족시켜 주는 한편 직접 집단화를 하게 되면 농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① 북한의 총 경지면적인 186만 정보의 약 54%인 100여만 정보가 무상으로 몰수되어 그 중 98만 정보가 72만 4천여 호의 농가에 분배되었고,

② 토지몰수와 병행(並行)해서 이에 부수되는 생산수단인 건축물(建築物), 역우마(役牛馬), 농기구(農機具), 관개시설(灌溉施設)등과 산림(山林)을 <국유화>시켰다. 즉 18만 4천여동(棟)의 건축물과 4천 7백여 두(頭)의 역우마 그리고 기타 농기구 등이 무상몰수되었다. 또한 5만여 몽리면적(蒙利面積: 물이 닿는 면적)을 가진 1,000여개의 관개시설을 몰수하여 <국유화>시켰고, 350만 정보의 산림을 <국유화>하여 임야(林野)의 이용권(利用權)마저 독점하게 되었다.

③ 소작제(小作制)는 폐지되었으나 경작권지제(耕作權地制)가 새로 확립되므로써 토지 <국유화>의 성격이 농후하게 되었다. 즉 자기의 노동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된 토지는 소작(小作), 매매(賣買), 저당권(抵當權)이 금지되었고 소유권자 자신이 직접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지개혁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산당의 기반구축(基盤構築)과

앞으로의 집단화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事前)의 단계적 조치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2. 농업집단화(農業集團化)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토지개혁의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서 농업집단화를 시작하기는 6.25동란 때 부터였다.

즉 6.25동란 기간인 1950년 부터 57년까지의 3년동안은 초보적(初步的)인 공동노력 형태로서 <소걸이반(共同牛耕班)>과 <품앗이반(勞力互助班)>이 나오게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같이 농민들에게 초보적인 공동노력 형태를 취하도록 권장한 것은 앞으로 그들이 실시하게 되는 농업집단화 정책에 북한 농민들을 순종(順從)케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공동노동을 통한 농사법을 경험하게 하고 소위 공동노동의 우월성(優越性)을 스스로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컸으므로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초보적인 농업집단화의 과정을 거친 후 농업집단화의 방침(方針)이 정식으로 결정된 것은 휴전(休戰) 직후에 개최되었던 당중앙위원회(黨中央委員會) 제 6차 전원회의(全員會議)에서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1953년 말부터 농업집단화는 본격적(本格的)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농업집단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회유(懷柔)하고 기만(欺瞞)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 북한이 이같은 방법을 쓴 이유는 처음부터 강제성을 띄우면 농민

들의 반발이 있거나 없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1953년 말부터 54년 초까지를 농업집단화의 경험적 단계라 하여 공산당원이 많은 빈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1개군(郡)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을 만들게 하였으며 (당시 북한 전지역에 조직된 협동조합의 수는 806개였고 11,897세대의 농가가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 숫자는 북한 전체 농가호수의 1.2%에 불과하였다)이 협동조합에 최대한의 물질적 원조(援助)와 혜택(惠澤)을 주었던 것이다. 즉

일반 개인 농민들로 부터는 총 수확량의 25%(실질적으로는 50%에 가깝다)의 현물세(現物稅)를 징수하는 반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를 깎아서 총 수확량의 20%정도만 납부하게 하였으며 농우(農牛)에 있어서도, 당시 북한의 실정으로 보아 농가 10호당 1마리가 있을까 말까한 정도였으나 협동조합에는 20~30두의 농우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고, 그 밖에 종자(種子), 비료(肥料) 농약(農藥)등을 우선적으로 대여해 주거나 무상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관개용수(灌溉用水)마저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개인 농민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농과 조합원 관계에 있어 조합원 우대정책을 쓰므로써 조합원이 되게끔 기만과 회유 등 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정책(基本政策)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빈농층에 의거하면서 중농(中農)과 손을 잡고 부농(富農)을 고립 제한시키는 계급정책(階級政策)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빈농을 기본 세력으로 삼은 공산당은

이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농업집단화의 투쟁대상인 부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농과 동맹을 한 것이다.

이것은 얼핏보면 가난한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부농 이외의 모든 세력과 일시적으로 동맹을 하여 하나씩 개별격파(個別擊破)하는 공산당 본래의 전술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로는, 이른바 자원적 원칙(自願的 原則)으로서 이것은 협동조합에 가입(加入)하고 탈퇴(脫退)하는 것은 각자 농민들의 자유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원적 원칙은 농민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한 전략적(戰略的)인 수단(手段)에 불과한 것으로서 오늘날 약 105만 여호에 달하는 북한의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세대는 한 세대도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는, 협동농장에 가입한 농민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신임하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서는 불신임하는 정책이다.

즉 개인농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립시키고 농사를 짓기 곤란하도록 만들므로써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못견디게 만드는 것이다.

네째로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해 주고 반대로 개인농에 대해서는 양곡수매 등의 방법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네가지 정책에 의해 농업집단화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있어서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그 중 어떤 것이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제 1형태로서는 농토, 농기계, 건축물, 농우 등의 개인 소유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협조만 하므로서 일해 준 만큼의 대가를 받는 형태이며,

제 2형태는 조합에 가입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주로 토지)을 집단화시키되 소유권은 인정해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인 경작권만을 조합에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그리고 제 3형태는 완전한 사회주의 형태(社會主義 形態)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이 조합의 공동소유가 되고 농민은 다만 노력만 제공하는 형태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는 했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가장 사회주의적 형태인 제 3형태만을 택하게끔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1958년 8월로서 완성시키고 동년 10월에는 농업협동조합을 말단 행정기관인 이(里) 단위로 통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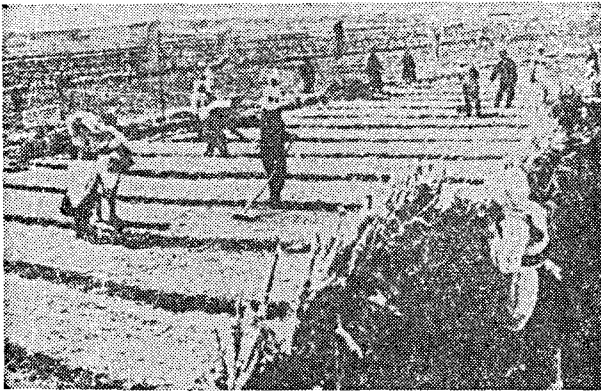
즉 1958년 10월 11일 <내각결정(內閣決定)> 125호인 <농업협동조합의 통합과 그 규모를 확장하는데 대하여>에 의하여 통합사업(統合事業)이 전개되어 동년 10월 16일부터 동년 말일까지 전 북한에 존재하고 있던 13,309개의 농업협동조합을 3,843개의 조합으로 통합시켰다.

이렇게 통합되므로써 이(里) 단위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한 개의 조합에 평균 40호 내지 100여호의 농가수를 망라하고 있었으나 통합이 된 후에는 평균 80호 내지 300호의 농가로 되었고, 경지면적에 있어서도 13정보로 부터 500정보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조합의 규모 확대 이외에 조합이 가지는 업무분야도 대폭 확대되어 농산(農産)뿐만 아니라 학교, 탁아소, 유치원, 진

료소, 선전실, 이발소, 상품공급, 신용업무, 공동식당 등의 관리 운영도 조합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써 협동조합이 농촌에서 생산(生産), 분배(分配), 소비(消費), 교환(交換), 교육(教育), 문화(文化)등의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의 이(里) 단위 통합으로, 북한의 말단 행정책임자(行政責任者)인 이인민위원장(里人民委員長)이 농업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管理委員長)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생산단위(生産單位)와 행정단위(行政單位)가 사실상 통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협동농장(協同農場)



집단농장의 노력부족을 부녀자들로 메우고 있는
오늘의 북한 농촌

북한은 1962년 1월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농장>이라고 개칭하였다.

따라서 협동농장은 행정구역(行政區域)의 말단(末端) 단위인

각 이(里)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협동농장에는 관리위원장(管理委員長)이 있는데 이는 농장의 책임자인 동시에 이인민위원회(里人民委員會)의 위원장(委員長)을 겸하고 있다.

협동농장에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이 관리위원회 밑에 작업반(作業班)이 있으며 작업반은 다시 분조(分助)로 나누어져 있다.

관리간부(管理幹部)로서는 관리위원장 밑에 2명의 부위원장과 1명의 기사장(技士長)이 있으며, 통계원(統計員), 부기원(簿記員), 창고장(倉庫長), 생산지도원(生産指導員) 등이 있다.

작업반(作業班)은 농산작업반(農産作業班)이 기본이나 과수(果樹)나 축산(畜産)등을 겸하는 농장에는 과수작업반(果樹作業班), 축산작업반(畜産作業班)등이 있으며 기타 공예작물(工蠶作物), 잡업(藝業)등의 생산이 많은 농장에는 그에 따른 작업반이 조직되고 있다.

농산작업반은 보통 100여명 정도의 농장원(農場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작업반은 다시 세분화(細分化)되어 농장원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는 분조(分組)가 있는데 이를 작업분조(作業分組)라고도 하며 사실상, 이 분조가 모든 작업의 기본단위로 되어 있다.

작업반에는 작업반장이 있으며, 분조에는 분조장이 있다.

그리고 이들 관리관부 및 작업반장과 분조장들이 모두 공산당원 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각 협동조합의 직속 상급기관으로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라는 것이 있어서 각 협동농장은 군협동농장위원회의 지시(指示)와 통제(統制)를 받게되어 있으며 또 한편으로 각 이(里)마다 북한 공산당의 말단조직인 이당위원회(里黨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일상적(日常的)인 당의 통제는 이당위원회로 부터 받게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국 협동농장은 당과 행정의 이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게되어 있는 것이다.

4. 농업노동의 기준작업정량(基準作業定量)

북한의 농민들은 전부가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들

협동농장원인 농민들은 완전히 농업노동자로 전락(轉落)되었고 오직 자기가 일을 한 양(量)과 질(質)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이 한 일의 양과 질을 평가할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기준작업량(基準作業量)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에 기준해서 작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정량제도(作業定量制度)는 농장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짜내자는 데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작업정량은 1일(8시간 기준)에 보통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장원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다. 그러나 실은 농장원들의 노동능력을 상(上), 중(中), 하(下)로 구분한다면 기준 작업정량을 정함에 있어서 중(中)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중(中)과 상(上)의 중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정량을 8시간에 초과해서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부득이 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야지대(平野地帶), 산간지대(山間地帶) 등의 지리적인 조건과 농기구 등 작업조건에 따라 각 협동농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 공산당은 농장원들로 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작업량 기준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는 협동농장 자체내에서도 그러하다.

그 실례(實例)로 북한은 1962년에 소위 <내각결정> 142호로 협동조합 조직 초기에 작성했던 작업정량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협동농장 기준작업정량(協同農場 基準作業定量)>을 새로 제정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수정없이 적용시키고 있다. 농장원들에 대한 작업정량은 기준작업정량표에 의하여 각 협동농장에서 지역적인 조건, 농기구 등 구체적인 실정에 알맞도록 설정

(設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업정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작업급수(作業級數)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작업 급수는 작업의 중요성, 힘의 소요 정도, 그리고 기술 이용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가장 힘이 적게드는 노동을 1급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노동을 5급으로 규정하고 5급에 해당되는 작업정량을 완수하였을 경우에는 1.5노동일(또는 1.5점수), 4급은 1.25, 3급은 1, 2급은 0.75, 1급은 0.5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하루에 규정된 급수의 작업정량을 완수했을 경우에도 작업의 급수(즉 종류)에 따라 노력점수(勞力點數)는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기준작업정량표에 의하여 그날 그날의 한 일을 평가받기 때문에 연령, 성별 등에 따라서 획득하는 노력점수는 달라지는 것이다.

5. 의무노동일(義務勞動日)과 노력일 평가(勞力日 評價)

북한에 있어서 모든 농장원들에게는 연간 노동책임일수(勞動責任日數)가 정해져 있다. 즉 남자는 230일, 여자는 180일, 임산부 또는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자는 13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노동수일에 대한 계산은 날자나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양(量)과 질(質)에 의해서 계산된다.

다시 말하면, 협동농장에 있어서의 1일 책임량은 작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점수제로 계산해서 남자는 230점 그리고 여자는 180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간 일한 분량이 이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말분배(年末年配)때 자기 몫으로 분배받을 양에서 15% 내외를 벌금으

로 빼앗기게 된다.

또한 2년 이상 자기 책임량의 점수를 따지 못하면 책임추궁을 받게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농촌에서 남자는 연간 230점, 여자는 180점, 임신부 또는 유아(1세 미만)를 가진 부녀자는 130점의 책임량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그 책임량 1점에 대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흙파기의 경우 : 하루에 $1.5m^2$ (입방미터)의 흙을 파서 500m(미터)의 거리를 운반해야 책임량 1점을 얻을 수 있다.
- ② 논감 매기의 경우 : 초벌김은 500평, 세벌김은 400평을 매면 책임량 1점을 얻을 수 있다.
- ③ 모심기의 경우 : 1명에 150주(株)를 기준하여 150평을 심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노동 책임량을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년 중 일기가 나빠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날을 뺀다면 매일과 같이 일을 하여야만 책임량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력일 평가(勞力日 評價)에 있어서는 소위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text{노력일} = \frac{\text{작업실적}}{\text{기준작업정량}} \times \text{작업등급에 의한 노력일} \times \text{작업의 질}$$

즉, 어느 농장원이 하루 모내기 작업을 200평 했으나 심어 놓은 모가 물에 뜨고 줄이 맞지 않을 경우 이 모내기 작업의 질이 80%로 평가된다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 모내기 하루 150평에 점수가 1.5의 경우 그 작업량은

$$\frac{1.5 \times 200(\text{작업실적})}{150(\text{작업정량})} \times 80\%(\text{질평가}) = 1.8(\text{노력일})$$

(등급노력일)

그러나 작업정량을 양(量)적인 면에서만 평가하는 예가 허다하며 질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평가되는 점수(노력일)는 곧 임금과 같다. 그러므로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만 움직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노력일(점수)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막혔거나 옥수수가 바람에 쓰러져도 노력일(점수)에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하게 쳐다 보고만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정량을 채우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는 예도 적지 않다.

따라서 북한 공산당은 이러한 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소위 <밭머리 총화>(일이 끝난후 농장원들이 밭머리에 모여 앉아 그날 그날의 작업량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것) 라는 것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勞動競爭運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6. 결산(決算)과 분배(分配)

협동농장원에 대한 노동보수(분배)는 소위 <사회주의적 분배제(社會主義的 分配制)>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 농장원의 동원된 비율과 작업능률에 따라 노력일(勞力日)이 확정되고 이 노력일에 기준해서 연말 또는 연초의 협동농장 결산총회에서 현물(現物) 또는 현금(現金)으로 분배된다.

노력일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기준 작업정량표가 있기는 하나 노동의 질과 양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뜻에서 작업반장, 분조장, 열성 당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노력일 평가조>(勞力日 評價組)를 조직하여 작업이 끝난 후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밭머리 총화>를 열고 심의에 붙여 각 농장원들의 그날의 노력일 점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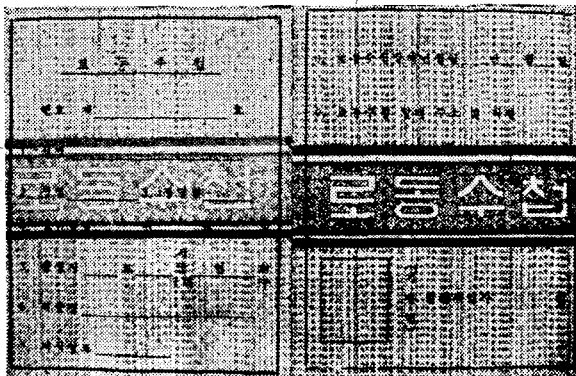
이러한 <밭머리 총화>를 실시하게 되므로써 분조원들은 각자 자기의 일에만 전력(全力)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까지 눈여겨 보게 된다. 그래야만 <밭머리 총화>때에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서로 감시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노력점수가 곧 자기의 임금(賃金)과 같은 것이므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정(査定)된 각 농장원의 노력점수는 농장원이 가지고 있는 노력수첩에 기록되며, 10일 단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수첩과 작업반장이 가지고 있는 노력일 정리대장과 대조하여 재확인하는 동시에 관리위원회(管理委員會)에 보고되면 관리위원회에서는 통계원(統計員)이 개인별로 정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자기의 연간 총노력일을 알 수 있으며, 연말 결산에 의해 전체의 생산결과가 확정되면 1일 노력일의 단가에 따라서 분배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협동 농장에서
의 결산분배에
있어서는 11월경
에 각 협동농장
에서 생산 및 노
력결산서를 작성
하는데 이 때에
는 작업반장까지



<노력일수가 기재되는 노동수첩>

포함한 관리위원회의 간부와 이당(里當) 및 농근맹(농업근로자동맹) 그리고 사노청(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등의 간부들이 참가하여 심의한다.

각 협동농장에서 심의된 생산 및 노력결산서는 군협동농장경영 위원회에 제출되며 여기에서 각 협동농장의 결산을 하나 하나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서 결산과 분배에 들어간다.

결산에서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그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총 수확고에서 일정한 양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는데 공제되는 양은 각 협동농장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종자대 약 3%, 사료대 1%, 화학비료대 4%, 농기계 사용료 2%, 관개시설 사용료 4%, 농기구 구매비 10%, 농장시설 확장비 30%, 관리운영비 7%, 원호기금 1.5%로 62.5%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전부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불과 37.5%에 불과하며 이것을 가지고 농장원들에 분배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하는 곡물의 종류에 있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주로 벼,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분배에서 문제되는 것은 노력자가 부족한 농가(農家)인 것이다. 즉 5명의 가족 중 3명의 노력자(勞力者)가 있는 가정과 1명만 있는 가정(예를 들면, 부인은 병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며 그 외에 아주 어린애들만이 3명이 있을 경우)과는 노력 점수의 합계에 의하여 분배를 받는 만큼 분배량도 3:1의 비율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협동농장원이 공동의 노력을 들여서 운영해 온 협동농장이지만 각 농가의 노력자 수와 노력 투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수입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력자가 부족한 농가는 불가피하게 당에서 대여해 주는 대여곡을 먹거나 또는 협동농장 기금 중 <원호식량>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조를 받아야만 되는데 보조받는 가정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분이 좋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 정간위 제 31—5—37 호 심의필

통 일 의 길

1973년 7월 일 인쇄

1973년 7월 일 발행

발 행 : 국토 통일원(교육홍보실)

인 쇄 : 서강 총업 주식회사

<비 매 품>

